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561 발의연월일: 2020. 10. 16.

발 의 자:이수진·송영길·김두관

양정숙 · 박상혁 · 이병훈

권인숙 · 임오경 · 한병도

김병기 · 황운하 · 양경숙

(12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위기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통합지원체 계를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전담 조직과 인력에 대한 규정은 없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공적 책임 하에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하여 위기청소년에게 통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전담공무원 및 민간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며,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정책 수립, 긴급대응체계 운영 등을 심의하는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한편, 위기청소년 복지 증진 관련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통합관리를 위해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정부로부터 연례적으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청소년상담원이 고유 사업으로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복지 지원 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조직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아울러, '가출'은 위기청소년이 가출할 수 밖에 없는 사회적 환경에 대한 고려없이 개인의 일탈·비행이라는 부정적 선입견을 강화하여 국가의 적절한 보호 및 지원 대책의 여지를 축소시키는 부작용이 있는용어이므로, 가출 이후 '가정 밖'이라는 위험상황에 초점을 두고 지원 및 보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가출 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으로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의규정을 신설 함(안 제2조).
- 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담 기구를 설치하고, 전담공무원 및 민간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 다.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역 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실무위원회 운영 근거를 규정함(안 제10조).

- 라. 여성가족부장관은 위기청소년 관련 정보의 효율적 처리, 정보 공유,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하여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12조의2).
- 마. 청소년의 가출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과 지자체장 이 교육·상담·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원 내용을 구체화함 (안 제16조).
- 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연례적으로 정부로부터 수탁받아 수 행하던 사무를 고유사무로 수행할 수 있도록 청소년상담원의 사업 범위에 포함함(안 제22조).
- 아. '가출청소년'의 용어를 '가정 밖 청소년'으로 변경함(안 제31조, 제3 2조의2).
- 자. 안 제12조의2의 통합정보시스템의 자료 또는 정보를 관리·이용하는 자가 직무상 알게 된 자료·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누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3조).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가정 밖 청소년"이란 가정 내 갈등·학대·폭력·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한다.

제9조제1항 중 "청소년복지 및「청소년기본법」제3호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을 "상담 및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으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9조의2(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통합지원체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공무원 및 민간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 ③ 관계 행정기관,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전담공무원 및 민간 전문인력의 업무 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의 사무 범위, 조직 및 운영, 제2항에 따른 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의 제목 "(운영위원회)"를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중 "제15조제2항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위기청소년의 복지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운영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의 "제1항 및 제2항에서"를 "제1항부터제3항까지에서"로, "운영위원회"를 각각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로 하다.

③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장에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① 여성 가족부장관은 위기청소년 관련 정보의 효율적 처리, 정보 공유 및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등 통합지원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

- (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수집·보유·이 용·제공할 수 있다.
- 1.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에 대한 정보
- 2. 제12조에 따른 청소년에 대한 전문가 상담에 대한 정보
- 3. 제13조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정보
- 4. 제14조에 따른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에 관한 정보
- 5. 제16조에 따른 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정보
- 6. 제19조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에 대한 정보
- 7.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관한 정보
- 8.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 관한 정보
- 9.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관련 정보
- 10. 「청소년 보호법」 제27조에 따른 인터넷게임 중독 등의 피해 청소년 지원 관련 정보
- 11.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관련 정보
- 1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사회보장급여 중 청소년 관련 정보

- 13.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자료 또는 정보
- 1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자료 또는 정보
- 1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청소년 지원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이라 한다)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이를 수집·연계·보유·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위기청소년의 효과적인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처리하는 민간단체 및 기관과 필요한 정보연계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연계 목적의 범위 내에서 해당 단체와 기관은 연계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은 통합정보시스템이 보유하는 자료·정보의활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이 관련 업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정보를 제공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은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만 이를 보유·이용할 수 있다.

-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⑦ 통합정보시스템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관계 전산망을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⑧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제1항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탁 할 수 있다.
- ⑨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의 자료 또는 정보를 취득하여 관리·이용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자료·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⑩ 그 밖에 통합지원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 제목 "(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지원)"을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예방하고 가출한 청소년의 가정·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쉼터의 설치·운영,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한 사후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홍보·연구·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사회 복귀를 돕

기 위하여 상담, 보호, 자립 지원,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를 "국가는 청소년복지 관련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을 효율적이 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 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청소년상담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청소년 상담 및 복지와 관련된 정책의 연구
- 2. 청소년 상담 · 복지 사업의 개발 및 운영 · 지원
- 3. 청소년 상담기법의 개발 및 상담자료의 제작 · 보급
- 4. 청소년 상담·복지 인력의 양성 및 교육
- 5. 청소년 상담 · 복지 관련 기관 간의 연계 및 지원
- 6. 청소년복지지원기관, 청소년복지시설 및「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대한 지도 및 지원
- 7. 청소년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 8. 제12조의2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 9. 국가가 설치하는 청소년치료재활센터 및 「청소년 보호법」 제35 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유지·관리 및 운영
- 10. 그 밖에 청소년상담원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수사

업

제31조제1호 중 "가출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으로 한다.

제32조의2의 제목 "(가출청소년의 청소년쉼터 계속 이용)"을 "(가정 박 청소년의 청소년쉼터 계속 이용)"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가출청소년"을 각각 "가정 박 청소년"으로 한다.

제4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2조의2제9항을 위반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의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제2조(정의) 이 법에	제2조(정의) ①
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4. (생 략)	1.~ 4. (현행과 같음)
<u><신 설></u>	5. "가정 밖 청소년"이란 가정 내
	<u>갈등·학대·폭력·방임, 가정해체,</u>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
	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한다.
제9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제9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의 구축・운영) ① 지방자치단체	의 구축·운영)①
의 장은 관할구역의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u>청소</u>	, <u>상</u> 담
년복지 및 「청소년기본법」 제3	및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
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를 효	
<u>율적으로 수행</u> 하기 위하여 지방자	
치단체, 공공기관, 「청소년기본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	
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	
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현 행	개 정 안
<u> <신 설></u>	제9조의2(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
	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
	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
	다)는 통합지원체계에 관한 업무
	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통
	합지원체계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u>있다.</u>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체계 전
	담기구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전담공무원 및 민간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관계 행정기관, 청소년단체 및
	<u>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u>
	전담공무원 및 민간 전문인력의
	업무 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체계 전
	담기구의 사무 범위, 조직 및 운
	영, 제2항에 따른 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
	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①지방자치단체	제10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①
의 장은 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혀 행

특별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u>운영위원회</u>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와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 람으로 구성한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u>운영위원회</u>의 구성, 위원의 위촉 및 회의 절차 등 <u>운영위원회</u> 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 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개	정	\circ }

., 0 2
복지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
하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히
<u>"심의위원회"라 한다)</u>
<u>.</u>
② 심의위원회
·.
③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
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u>심</u> 의위원
회 및 실무위원회
•

제12조의2(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① 여 성가족부장관은 위기청소년 관련 정보의 효율적 처리, 정보 공유 및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등 통합

현 행	개 정 안
	지원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
	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을 구
	축·운영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통합정보시
	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정보를 수집·보유·이
	용·제공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에 대한 정보
	2. 제12조에 따른 청소년에 대한
	전문가 상담에 대한 정보
	3. 제13조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정보
	4. 제14조에 따른 위기청소년 특
	별지원에 관한 정보
	5. 제16조에 따른 청소년 가출 예
	<u>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정보</u>
	6. 제19조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
	에 대한 정보
	7.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
	센터에 관한 정보

현 행	개 정 안
	8.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에 관한 정보
	9.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관련 정보
	<u>10. 「청소년 보호법」 제27조에</u>
	따른 인터넷게임 중독 등의 피
	해 청소년 지원 관련 정보
	11.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관련
	<u>정보</u>
	1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
	률」 제2조제1호의 사회보장급
	여 중 청소년 관련 정보
	13.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
	록 자료 또는 정보
	1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자
	<u>료 또는 정보</u>
	1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청소년 지원 관련 업무 수
	<u>행에 필요한 정보</u>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
	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

현 행	개 정 안
	관·단체(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이라 한다)에 통합정보시스템
	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정보
	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
	적의 범위에서 이를 수집·연계·보
	유·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
	앙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위기청소년
	의 효과적인 보호와 지원을 위하
	여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처리하
	는 민간단체 및 기관과 필요한 정
	보연계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
	다. 이 경우 정보연계 목적의 범
	위 내에서 해당 단체와 기관은 연
	계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은 통합
	<u>정보시스템이 보유하는 자료·정보</u>
	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여
	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이 관련 업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보를 제공
	할 수 있고 정보를 제공받은 관계

현 행	개 정 안
	중앙행정기관 등은 제공받은 목적
	의 범위에서만 이를 보유·이용할
	<u>수 있다.</u>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통합정보시
	스템의 구축·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시
	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⑦ 통합정보시스템은 제1항에 따
	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
	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1항에 따
	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관계
	전산망을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
	<u>다.</u>
	⑧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2조에 따
	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제1항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의
	<u>운영을 위탁 할 수 있다.</u>
	⑨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의 자료 또는 정보
	를 취득하여 관리·이용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자료·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그 밖에 통합지원시스템의 구
	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혀 행

제16조(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 지원)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 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소년의 가출 을 예방하고 가출한 청소년의 가 정·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 담,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 터의 설치·운영, 청소년쉼터 퇴 소 청소년에 대한 사후지원 등 필 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신 설>

- 제22조(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① <u>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기</u> 위하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하 "청소년상담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1. 청소년 상담 및 복지와 관련된 정책의 연구
 - 2. 청소년 상담 · 복지 사업의 개

개 정 안

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 제16조(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 지원)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 <u>원)</u> ① ------

> - 예방하기 위한 교육·홍보·연 구·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 보호, 자립 지 원,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u>③</u>·<u>④</u>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 음)

제22조(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제22조(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① 국가는 청소년복지 관련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을 효율적이 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

<삭 제>

현 행	개 정 안
발 및 운영·지원	
3. 청소년 상담기법의 개발 및 상	
<u>당</u> 자료의 제작·보급	
4. 청소년 상담·복지 인력의 양	
<u>성 및 교육</u>	
5. 청소년 상담・복지 관련 기관	
간의 연계 및 지원	
6. 지방자치단체 청소년복지지원	
기관의 청소년 상담 · 복지 관련	
사항에 대한 지도 및 지원	
7. 청소년 가족에 대한 상담・교	
<u> भ</u>	
8. 청소년에 관한 상담・복지 정	
보체계의 구축·운영	
9. 그 밖에 청소년상담원의 목적	
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	
<u>수사업</u>	
<u><신 설></u>	② 청소년상담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 상담 및 복지와 관련된
	<u>정책의 연구</u>
	2. 청소년 상담・복지 사업의 개
	<u>발 및 운영·지원</u>
	3. 청소년 상담기법의 개발 및 상
	<u> 담자료의 제작·보급</u>

현 행	개 정 안
	4. 청소년 상담·복지 인력의 양
	<u>성 및 교육</u>
	5. 청소년 상담・복지 관련 기관
	간의 연계 및 지원
	6. 청소년복지지원기관, 청소년복
	지시설 및 「학교 밖 청소년 지
	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대
	한 지도 및 지원
	7. 청소년 가족에 대한 상담・교
	<u>육</u>
	8. 제12조의2에 따른 통합정보시
	스템의 운영
	9. 국가가 설치하는 청소년치료재
	<u>활센터 및 「청소년 보호법」</u>
	제35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보
	호·재활센터 유지·관리 및 운영
	10. 그 밖에 청소년상담원의 목적
	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
	<u>수사업</u>
<u>②</u> ~ <u>④</u> (생 략)	<u>③</u> ~ <u>⑤</u> (현행 제2항부터 제4항
	까지와 같음)
제31조(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제31조(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청소년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이하 "청소년복지	

혀 개 정 아 했 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쉼터: 가출청소년에 대하 1. -----: 가정 밖 청소년-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 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 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 2.~4. (생략) 2~4. (현행과 같음) 제32조의2(가출청소년의 청소년쉼터 제32조의2(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 계속 이용) 청소년쉼터(가출청소 쉼터 계속 이용) -----가정 밖 년을 7일의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청소년----보호하는 청소년쉼터는 제외한다) 를 설치 · 운영하는 자는 해당 청 소년쉼터에 입소한 <u>가출청소년</u>이 ----- <u>가정 밖</u> 청소년-가정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 그 밖에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유가 원인이 되어 가출한 경우에는 그 가출청소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소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가출청소년이 다 --. ---- 가정 밖 청소년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_____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제43조(벌칙) ① · ② (생 략) 제43조(벌칙) ① ·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u> <신 설></u>	③ 제12조의2제9항을 위반하여 통
	합정보시스템의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누설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